1. 연 혁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 국세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통계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통계표준분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1958년 제정되어 각국에서 사용토록 권고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근거로 1963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제정되었다.

1963년 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1966년에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68, '88, '08)과 국내 노동시장의 직업구조와 직능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6차례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70, '74, '92, '00, '07).

2007년에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개정을 반영함으로써 국제 비교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였다. 전문가와 준전문가(기술공)의 대분류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반영하고 현장 적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 구조 및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성장 추세 직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분류를 세분하는 한편, 고용 인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분류항목이 과잉 세분되어 현장 적용이 어려운 농림·어업 관련 직종 및 제조업 분야 기계 조작 직종은 분류항목을 통합·축소하는 등 분류체계 전반을 개정하였다.

2007년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전문영역으로 분화되는 등 직무 변화가 있는 직업 영역들에 대한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15년 5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2년간에 걸친 개정작업을 추진,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로 확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제7차 개정 주요내용

가. 개정 방향

(1) 지난 개정 이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전면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되, 중분류 이하 단위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2)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의 분류 기준, 적용 원칙, 구조 및 부호 체계 등 직업분류 기본 틀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2007년 7월 개정작업에 이어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개정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3)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의 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 기술직의 직무영역 확장 등 지식 정보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분 및 신설하였다. 고용규모 대비 분류항목 수가 적은 사무 및 판매·서비스직 분류는 세분하고 자동화·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분류는 통합하였다.

(4) 관련 분류 간 연계성, 통합성을 제고하고, 직업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 9월 개정·고시된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와 2017년 1월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명칭변경, 분류신설 등에 반영하였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특수 분류인 고용직업분류가 세분류 수준에서 일대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복수연계 항목을 세분하였다.

나. 개정 특징

(1) 전문 기술직의 직무영역 확장 등 지식 정보화 사회 변화상 반영

4차 산업 혁명 등 ICTs 기반의 기술 융·복합 및 신성장 직종을 발굴하여 분류체계에 반영하였다. 데이터 분석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을 신설하고, 문화·미디어 콘텐츠 분야 신성장 직종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용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등을 신설하거나 세분하였다.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라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을 상향 조정하고, 대형재난 대응 및 예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을 신설하였다.

(2)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 세분 및 신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일자리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놀이 및 행동치료사를 신설하고, 임상심리사, 상담 전문가 등 관련 직종을 상향 조정하였다. 여가 및 생활 서비스 일자리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반려동물 훈련사,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원 등을 신설하였다.

(3) 고용규모 대비 분류항목이 적은 사무 및 판매·서비스직 세분

이제까지 포괄적 직무로 분류되어 온 사무직의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기타 금융 사무원, 행정사, 중개 사무원을 신설하고, 판매·서비스직의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의 직업을 신설 또는 세분하였다.

(4) 자동화·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통합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과실 및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등은 복합·다기능 기계의 발전에 따라 세분화된 직종을 통합하였다.

다.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

대분류 1 관리자

○ 경영활동에서 마케팅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분야 직무가 분화되면서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를 소분류로 신설하고, 이하 세세분류로 '마케팅 관리자'와 '광고 및 홍보 관리자'를 배열하였다.

○ 문화 및 예술 관리자를 '공연·전시 예술 관련 관리자'로 영상 관련 관리자를 '방송·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로 항목명을 변경하여 분류명과 포괄범위가 일치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관리가 강화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자'를 신설하고, '건설 관련 관리자'를 건축, 토목, 조경 관리자로 세분하였다.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세분류 '자연과학 연구원' 하위분류인 천문 및 기상학 연구원을 '지구 및 기상 과학 연구원'과 '천문 및 우주 과학 연구원'으로 세분하고, 학문분야의 인접성 및 관련성을 고려하여 세세분류 배열 순서를 조정하였다.

○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 소분류 수준에서 세분하고, 웹 운영자는 소분류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이하, 웹 개발자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하위분류로 이동하였다. 또한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를 세분·신설하고, '데이터 분석가'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분류명칭 및 직무 범위를 조정하였다.

○ 중분류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서는 직무내용이 상이하고 각각 고용규모가 큰 건축가와 건축공학 관련 기술자를 세분류 수준에서 분리하였다. 전기·전자와 기계공학 분야 기술 고도화 및 고용규모를 고려하여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을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분리하였다.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은 세세분류 '로봇 및 그 외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에서 분리하여 세분류로 상향·신설하였다. 사회적 중요성 및 인접분야 관련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방, 안전관리, 환경공학, 가스, 에너지 분야 기술자 및 시험원의 분류체계를 소분류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과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재편하였다.

○ 중분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이하에서는 '전문 의사' 이하 세세분류 명칭을 소아과 의사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사로 정신과 의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사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한의사를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영양사를 '임상영양사'와 '일반영양사'로 세분하였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 및 복지를 위한 전문 보건 및 복지 관련 인력인 '보조공학사', '임상심리사', '놀이 및 행동치료사', '상담 전문가'와 '청소년 지도사'는 상향 조정하거나 세분·신설하였다.

○ 세분류 ‘대학 교수’와 ‘대학 시간강사’의 세세분류가 계열별 체계로 되어있던 것을 관련 표준 분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대분류 기준 체계를 반영하여 영역별 체계로 재편하였다.

○ 중분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이하에서는 소분류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하위분류를 세분류 수준에서 ‘작가’, ‘출판물 전문가’,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로 재편하고, 평론가는 직무 특성 및 국제분류를 고려하여 상위분류를 ‘작가’에서 ‘기자 및 언론보도 관련 전문가’로 이동하였다. 소분류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의 분류명을 관련 직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 ‘시각 및 공연 예술가’로 변경하였다. 신성장 직종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문화예술 분야 매개인력인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를 세분류로 신설하였다. 소분류 ‘식문화 관련 전문가’를 신설하고, 이하 세세분류를 ‘주방장’, ‘요리 연구가’, ‘그 외 식문화 관련 전문가’로 재편하였다.

대분류 3 사무종사자

○ ‘대학 행정조교’는 대학 행정의 보조자로서 교육조교(TA), 연구조교(RA) 등과는 구분되며, 대학 내 고용규모가 상당하므로 ‘총무 사무원’에서 분리하여 세세분류로 신설하는 한편, 세분류 ‘기타 사무원’ 하위분류에 행정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행정사’를 신설하였다.

○ 금융 관련 사무원의 경우 관련 분야의 전체대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은행, 금융, 보험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으로 구분하여 세분하였다.

○ ‘사무 종사자’ 이하 안내원은 정해진 공간에서 해당 시설, 기관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위치, 운영시간, 담당자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박물관, 문화재, 전시회, 박람회와 같은 시설 또는 공간에서 장소를 이동하여 견학, 해설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사자’로 이동하였다.

○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방병원, 건강검진 센터 등의 병원 코디네이터)을 신설하였다.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 중분류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하에서는 '해양 경찰관'과 '일반 경찰관'에 수사관을 분류명에 병기하여 치안경찰과 함께 검찰 수사관 및 형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특수 경비원'을 시설, 호송, 기계, 특수 등으로 세분하였다. 소년 보호관의 분류명은 '소년원 학교 교사'로 변경하였다.

○ 국제분류(ISCO-08)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사회변화로 인한 돌봄·복지 및 대인 서비스 분야 인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관련 분류체계를 정비하였다. 보건, 의료, 복지, 미용 및 예식, 장례 등 대인 서비스 직무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중분류명을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으로 변경하였다. 세분류 '돌봄 서비스 종사원' 이하에 세세분류 '요양 보호사'와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을 신설 하였다. '보육 관련 시설 종사원'을 신설하여 키즈카페나 대형 상업시설 내 탁아시설 등 보육 관련 시설의 아동 돌봄 종사원을 분류하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관련 인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세분류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을 신설하고, 이하 세세분류에 '반려동물 미용사', '반려동물 훈련사', '수의사 보조원'을 배열하였다.

○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로 관련 인력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여가관련 직종의 직무범위를 넓히기 위해 세분류 명칭을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에서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으로 변경하여 미술관 및 박물관의 전시품, 예술품을 설명하고 안내하거나 박람회, 전시회에서 전시내용을 안내하는 직무를 대분류 '사무 종사자'에서 '서비스 종사자'로 이동하였으며, 일반 관광 가이드와 직능수준, 직무내용 등에서 구분되는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를 신설하였다.

대분류 5 판매 종사자

○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현업과 일선 관리(first-line managing)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점주(shopkeepers) 및 일선 관리 종사원(shop supervisors)을 단순 판매직 및 관리자(managers)와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분류를 신설하였다. 대분류 '관리자' 직군과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소규모'와 '일선 관리(first-line)'를 분류명에 명기하였다. 대여(렌털) 제품 시장 성장을

반영하여 중분류 '매장 판매직'의 분류명이 '상품 대여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으로 변경하였다.

○ '자동차 영업원'을 신차와 중고차 영업원으로 세분하고, 관계법령 변화를 반영하여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을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명칭 및 직무범위를 변경하였다.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대출 모집인'과 '신용카드 모집인'을 신설하였다.

○ '상점 판매원'과 '상품 대여원' 이외의 판매직 중 통신, 방문, 노점 판매직을 소분류 '통신 관련 판매직'과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으로 재편하였다. 이동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의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으로 명칭 및 직무범위를 변경하였다.

대분류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세분류 '조림·영림 및 벌목원' 중 '영림'을 '산림 경영'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동물원 등에서 관람 또는 공연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 사육사'를 출하 목적의 동물이나 가축 사육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동물원 사육사'로 변경하였다.

대분류 7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 국제분류(ISCO-08)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유사·인접 분야 직무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분류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을 신설하고,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과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에 분산되어 있던 컴퓨터와 이동전화기, 정보 통신 기기, 방송·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을 하위분류로 재편하였다.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이하 가죽 수선원과 모피 수선원을 통합하고, '자동차 튜닝원'(드레스업 튜닝 제외)을 신설하였다.

대분류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자동화·기계화 진전에 따라 기존에 통조림기, 살균기, 냉장기, 건조기 등으로 세분되어 있던 '과실 및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과 연조기, 조방기, 정방기, 권사기, 혼합기, 소면기, 래핑기 등으로 세분되어 있던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등 복합·다기능 기계 조작직의 분류를 통합하였다.

○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을 알코올성 음료와 비알코올성 음료로 세분하고, 차·커피 및 코코아 제조기 조작원 중 분말류의 제조기 조작원은 세분류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으로 액상 가공 음료 제조기 조작원은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기 조작원’으로 범위를 조정하여 산업분류 체계와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 상대적으로 인력규모가 작은 화물열차 차장, 철도 신호원, 철도 수송원을 ‘철도운송 관련 종사원’으로, 갑판장, 갑판원, 기관부원을 ‘선박부원’으로 통합하였다. 세분류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이하 세세분류를 화물차의 총중량 규모에 따라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중형 화물차 운전원’, ‘대형 화물차 운전원’으로 재편하였다.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원’과 ‘덤프트럭 운전원’을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에서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이하 세세분류로 이동하였다.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 자동판매기 관리원을 제외한 각종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수금원’은 ‘사무 종사자’로, 경비원 중 특수 및 시설 경비 직무는 ‘서비스 종사자’로 대분류를 이동하고, 직무내용 및 직능유형을 고려하여 ‘건물 관리원’은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매트리스 등 대여 제품 유지·관리 직종이 증가함에 따라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을 신설하였다.

대분류 A 군인

○ 이번 개정에는 의무복무 중인 사병 및 장교도 직업 활동에 포함하여 모든 군인을 직업분류 범위 안에 포괄하였다. 단,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직업분류 포함 여부는 경제활동 상태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3.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요

가. 직업의 정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에서 직무(job)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tasks and duties)'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직업(occupation)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직업은 또한 경제성을 충족해야 하는 데, 이는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급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이나 전업 학생의 학습행위는 경제활동 혹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업의 성립에는 비교적 엄격한 경제성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발생적인 이득의 수취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과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업 활동은 전통적으로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성은 비윤리적인 영리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추구는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성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써 모든 직업 활동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 즉 사회적인 기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1)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2)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에 의한 배당금이나 주식투자에 의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4)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5)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7)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8)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9)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10)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

나. 직업분류의 목적

직업분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고용관련 통계조사나 각종 행정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직업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근거로 설정되고 있다.

직업분류는 고용 관련 통계 및 장·단기 인력수급 정책수립과 직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활용되며, 다음에도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각종 사회·경제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
-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안내 기준
-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
- 직종별 특정질병의 이환율, 사망률과 생명표 작성 기준
- 산재보험요율, 생명보험요율 또는 산재보상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다.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 직업분류이며, 우리나라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the ability to carry out the tasks and duties of a given job)인 직능(skill)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직능수준(skill level)은 직무수행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다.

하나의 직업(occupation)은 직무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여러 직무(job)의 묶음이다. 어떤 직무의 집합을 여타 직업과 구별하고 동일한 직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직무상 서로 다른 것을 규정하는 직업별 직무 배타성(exclusivity)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직무수행 조건의 복잡성과 기업규모의 차이 등에 따른 직무범위의 격차 때문에 직무별 유사성과 배타성을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직무 유사성의 기준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knowledge), 경험(experience), 기능(skill)과 함께 직무수행자가 입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skill requirements) 등이 있다. 때로는 직업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기업의 특성, 생산 과정이나 최종 산출물 등이 중요할 때도 있다. 유사하지 않은 직업은 배타성의 요건이 충족되어 상호 다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별로 노동시장의 형성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분명한 배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무 범주화 기준에는 직무별 고용의 크기 또한 현실적인 기준이 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세분류 단위에서 최소 1,000명의 고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고용자 수가 많은 세분류에는 5,000~10,000명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서 정의한 직능수준(skill level)은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적인 직업훈련과 직업경험을 통하여서도 얻게 된다. 따라서 분류에서 사용되는 기본개념은 정규교육 수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업무의 수행능력이다. 이러한 기본개념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체계는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직능수준으로 구분하고, 직무능력이 정규교육(또는 직업훈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11)상의 교육과정 수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제1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제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간단한 수작업 공구나 진공청소기, 전기장비들을 이용한다. 과일을 따거나 채소를 뽑고 단순 조립을 수행하며, 손을 이용하여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은 최소한의 문자이해와 수리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으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제1직능 수준의 일부 직업에서는 초등교육이나 기초적인 교육(ISCED 수준1)을 필요로 한다.

(2) 제2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능력,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보통 중등 이상 교육과정의 정규교육 이수(ISCED 수준2, 수준3)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부 전문적인 직무훈련과 실습과정이 요구되며, 훈련실습기간은 정규훈련을 보완하거나 정규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 운송수단의 운전이나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일부의 직업은 중등학교 졸업 후 교육(ISCED 수준4)이나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제3직능 수준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시험원과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관련 분류나 스포츠 관련 직업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ISCED 수준5)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4) 제4직능 수준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이 요구된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분석과 문제해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가 대표적인 직무분야이다. 일반적으로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수준(ISCED 수준6 혹은 그 이상)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 표준직업분류와 직능수준과의 관계

위와 같은 4개의 직무능력 수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

1 관리자	: 제4직능 수준 혹은 제3직능 수준 필요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제4직능 수준 혹은 제3직능 수준 필요
3 사무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4 서비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5 판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9 단순노무 종사자	: 제1직능 수준 필요
A 군인	: 제2직능 수준 이상 필요

그러나 이러한 직능수준이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직업분류 원칙

(1) 직업분류의 일반원칙

- **포괄성의 원칙**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배타성의 원칙**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음식조리와 제공이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조리사의 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에,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독립적인 업무로 구성될 수 있다.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직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한다.

- **주된 직무 우선 원칙**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평가하여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과 진료, 처치, 환자상담 등의 직무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조리와 배달의 직무비중이 같을 경우에는, 조리의 직능수준이 높으므로 조리사로 분류한다.

- **생산업무 우선 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빵을 생산하여 판매도 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빵원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가장 먼저 분야별로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 **수입 우선의 원칙**

  위의 경우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입(소득이나 임금)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위의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4) 순서배열 원칙

동일한 분류수준에서 직무단위의 분류는 다음의 원칙을 가능한 준수하여 배열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동일한 직업단위에서 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대분류 7과 8의 기능원과 조작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이 중분류 수준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중분류의 순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 **특수-일반분류**

  직업의 구분이 특수 분류와 그 특수 분야를 포함하는 일반 분류가 있을 경우, 특수 분류를 먼저 배열하고 일반분류를 나중에 배열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연구원을 먼저 위치시키고, 이어서 자연과학 연구원을 배열하였다.

- **고용자수와 직능수준, 직능유형 고려**

  직능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고용자수가 많은 직무를 우선하여 배치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분류 1 관리자의 중분류에서 공공 및 기업고위직을 먼저 배열한 것은 이 분야가 직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리자를 관리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또 직능유형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 분류하였는데, 이는 직업분류의 용이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바.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

(1) 행정 관리 및 입법적 기능 수행업무 종사자

행정 관리 및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분류 1 관리자'에 분류된다. 따라서 주된 업무가 정책 결정, 법규 등의 입안 업무를 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및 공·사기업 관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또한 대규모의 농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관리자, 고용주 중에서 기획, 조정, 통제, 지시 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직무수행을 감독 및 관리하는 직무에 평균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종사하는 자만 관리자로 분류된다.

(2) 자영업주 및 고용주의 직종

자영업주 및 고용주는 수행되는 일의 형태나 직무내용에 따른 정의가 아니라 고용형태 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정의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직업분류에서 자영업주 및 고용주의 직업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관리자가 하는 일과 유사한가 아니면 동일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가, 즉 주된 직무 우위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 중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직무로 분류된다. 단, 소규모 상점을 독립적으로 또는 소수의 타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를 분류하기 위해 신설된 '소규모 상점 경영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게스트 하우스, 민박, 음식점, 카페 등의 소규모 업체 운영자들은 관리가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 요리, 웨이터처럼 하는 일의 주된 업무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3) 감독 직종

반장 등과 같이 주로 수행된 일의 전문, 기술적인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되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주된 업무가 자기

감독 하에 있는 일이나 근로자의 일상 작업 활동을 기획, 조정, 통제, 지시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관리직으로 보아 '12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직',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으로 각각 분류된다. 단,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소매점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내에 단일 매장 내의 인력을 지휘하고, 판매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일선 관리하는 자를 분류하기 위해 제7차 개정에서 신설된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은 예외로 한다.

(4) 연구 및 개발 직종

연구 및 개발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된다. 다만, 연구자가 교육에 종사할 경우에는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분류한다.

(5) 군인 직종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 군인'에 분류된다. 이것은 수행된 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보다는 자료수집상의 현실성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6) 기능원과 기계 조작원의 직무능력 관계

하나의 제품이 기능원에 의해 제조되는지 또는 대량 생산기법을 유도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제조되는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기능원은 재료, 도구, 수행하는 일의 순서와 특성 및 최종제품의 용도를 알아야 하는 반면에, 기계 조작원은 복잡한 기계 및 장비의 사용방법이나 기계에 어떤 결함이 발생할 때 이를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기계 조작원은 제품 명세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조기법이 도입될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업분류에서는 이러한 직무능력 형태의 차이를 반영하여 대분류 7, 8을 설정하였다. '대분류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는 목 공예원, 도자기 공예원, 보석 세공원, 건축 석공, 전통 건물 건축원, 한복 제조원과 같은 장인 및 수공 기예성 직업을 분류하였고, '대분류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는 제품의 가공을 위한 기계 지향성 직업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전자·제어 기술과 자동화 기계의 발전에 따라 기능직무 영역이 축소되고 조작직무 영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7) 직능수준과 아동 돌봄 관련 직종 분류

영유아 교육관련 종사자인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하 '유치원 교사'나 '보육 교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련의 놀이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전반을 운영한다. 반면,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 카페, 탁아기관 등 보육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대분류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이하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은 놀이나 교육적 활동 전반을 계획하거나 조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주로 돌봄 대상 영유아를 보호하거나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먹는 등의 기초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직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8) 직능수준과 음식 조리 및 준비 관련 직종 분류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하는 직업 중 대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하 '주방장'은 조리법을 정하고, 새로운 메뉴의 요리를 개발하는 한편,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음식점의 경영계획에 참여한다. 반면,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이하 '조리사'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지만 주방장의 감독 또는 정해진 조리법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는 '생산' 측면에 직무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 이하 '패스트푸드 준비원'과 '주방 보조원'은 주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자격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훈련이나 경험의 수준에 있어 조리사와 구별된다.

사. 분류체계 및 분류번호

직업분류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상위에는 소분류-중분류-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분류는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56개, 세분류 450개, 세세분류 1,23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분류번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A로 표시하며 대분류 1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3자리, 세분류 4자리, 세세분류는 5자리로 표시된다.

동일 분류에 포함된 끝 항목의 숫자 9는 '기타~(그 외~)'를 표시하여 위에 분류된 나머지 항목을 의미한다. 또한 끝자리 0은 해당 분류수준에서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 직업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은 분류단계별 항목 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분류단계별 항목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전체	52	156	450	1,231
1 관리자	5	16	24	8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	44	165	463
3 사무 종사자	4	9	29	63
4 서비스 종사자	4	10	36	80
5 판매 종사자	3	5	15	43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5	12	29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21	76	198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31	65	220
9 단순노무 종사자	6	12	24	49
A 군인	1	3	4	4

아. 직업 대분류별 개념

대분류 1 관리자

의회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표, 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조정한다.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분류 3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이나 신변보호, 돌봄, 보건·의료분야 보조 서비스와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공공 사회서비스 및 개인 생활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분류 5 판매 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한다.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홍보하며, 매장에서 계산을 하거나 요금정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분류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하고, 물고기 및 기타 수생 동·식물을 번식 및 양식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분류 7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의 성능보다 사람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중요하다. 자동화된 기계의 발전에 따라 직무영역이 축소되는 추세인데,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분류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작업은 기계 조작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 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되며, 기계의 성능이 생산성을 좌우한다. 또한 여기에는 운송장비의 운전업무도 포함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직능수준이 낮으므로 단순 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분류 A 군인

의무 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군인을 말한다. 직업정보 취득의 제약 등 특수 분야이므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업에 고용된 민간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 이상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